

##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관련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시행(2018.9.28.)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3년)이 신설·적용되어, 2018년 9월 28일 이후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유효기간이 2021년 9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승인 받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 사용하고 자 하는 회원 및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akom.org>)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심의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효기간 연장 심의 신청 시점의 의료인 정원·약력, 의료기관 인증기간만료, 심의기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기 승인받은 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3년)만을 연장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연장 심의신청을 통해 광고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의료법령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표2)

※ 수수료액(제11조 관련)

\* 유효기간 연장 심의 수수료액 기준

- 기 승인받은 광고의 유효 기간(3년) 만료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기 승인광고 심의 수수료액의 50%를 부과함. (단,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재시행(18.9.28.)된 이후 승인된 광고에 한하여 적용함)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기 승인받은 회원에 대하여 개별 문자 안내 예정임. 끝.